

# 廢棄物規制의 改善方案

安 基 煕\*

—>차 례<—

- |                    |                 |
|--------------------|-----------------|
| I. 序 說             | V. 外國의 廢棄物規制    |
| II. 廢棄物規制의 現代的 傾向  | VI. 廉棄物規制의 改善方案 |
| III. 廉棄物規制의 主要基盤實態 | VII. 結 語        |
| IV. 廉棄物規制의 問題點     |                 |

## I. 序 說

### (1) 廉棄物에 의한 環境污染

「人間環境의 保護와 改善은 人間의 福祉와 經濟發展에 미치는 主要問題 이므로 이는 全 世紀 人間의 切迫한 念願이고 모든 政府의 責任이다.」라는 이 말은 UN 人間環境宣言의 한 귀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오늘날 產業의 急成長, 科學技術의 革新, 人口의 急增加, 都市의 高密度化 등으로 인한 大量의 廉棄物 등은 人間界와 自然界와의 均衡關係를 惡化一路로 물 아가서 이대로 適正한 環境保全을 外面한 채 持續的인 經濟成長만을 꾀하다가는 回復할 수 없는 더 큰 損害를 볼 가능성이 질어지고 있다.

廢棄物이라 함은 人間의 日常生活과 產業活動의 過程으로부터 發生되는 副產物로서 人間生活領域의 範圍가 擴大되어 감에 따라 그 種類도 점차 大量化・多樣化할 뿐 아니라 有害한 重金屬 物質이나 放射性物質 등과 같이 長期間에 걸쳐 水質과 土壤을 汚染시킴으로써 自然生態系의 危機를 유발함과 함께 人間의 健康, 動・植物 및 農作物 등의 生育環境에 이르기까지 크게 위협을 주고 있는 段階에 이르렀다. 世界的으로 볼 때에도 今世紀의 後半을 가리켜 高度의 經濟成長의 時代인 同시에 各種 生產의 大型化, 大量消費의 時代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副產物로서의 大量廢棄物

\* 麗熙大學校行政大學院 讲師・博士過程 國際環境問題研究所長

에 의한 資源의 枯渴, 自然의 破壞, 汚染의 增大는 더욱이 深刻화할 것이豫想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2 年代 이후부터 급속한 經濟成長과 國民生活의 向上으로 各種 廢棄物이 量產되고 그 性質도 多樣化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適正한 管理體系 및 規制의 未治 技術의 未開發 등으로 大氣污染·水質污染·土壤污染 및 惡臭 등이 深刻할 뿐 아니라 특히 廢棄物의 경우 國土가 협소하여 處分地가 不足한 형편인데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產業廢棄物, 都市의 一般廢棄物을 天然湖沼·低地帶 등에 단순 埋立에 의해 處理되고 있어 장래의 土地 및 물의 效率的 利用을 고려할 때 深刻한 第2次의 汚染까지 誘發할 것으로 예상된다.

有害의 廢棄物 이외에도 人類의 새로운 文明이 낳은 第3의 汚染物質(third pollutants)이라 불리워지는 비닐, 합성수지, 유리병, 깡통類 등의 固形廢棄物(solid waste)이 부식되지도 않은 채 每年 空地와 自然界에 放置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環境破壞가 점점 深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處理 및 管理方法이 대단히 부적당하다는 것이 全世界的으로共通의 關心事로 「클로즈 업」되고 있다. 즉 先進工業國은 지금까지 水質과 大氣污染에만 고심해 오다가 1970 年代에 들어오면서 第2次 汚染의 교훈(라브·커넬事件)<sup>1)</sup>으로 날로 空地에 쌓이는 固形廢棄物의 處理에 지대한 關心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래까지의 處分方法은 주로 燒却하거나 都市 近郊의 低地帶 등에 埋立하여 왔으나 每年 增加되는 廢棄物의 量에 따르는 埋立地가 부족하여 廢礦 또는 열차에싣고 먼 거리로 해매개되나 이것도 많은 費用이 들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하여 處理되지 못하고 매일 空地에 쌓이는 廢棄物은 異美的인 環境破壞뿐만 아니라 廢棄物을 燒却(incineration)할 경우 大氣污染의 原因이 되며, 이를 통하여 濾過될 경우 地表水가 土壤을 汚染시킨 뒤 惡臭를 誘發하며, 진딧물, 파리, 모기, 쥐 등의 病의 媒體를 통하여 保健上の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그로 인한 各種 汚染問題는 環境惡化는 물론 財產의 價値를 下落

1) Love canal 事件: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로부터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주택가 일각에서 20년전의 산업폐기물의 단순 매립에 의한 제2차 오염사태가 심각화하여 1978~1980년까지 제1,2차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주민 1,037 세대를 이주시킨 충격적인 사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適切한 規制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效果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廢棄物의 「處分」概念에서 벗어나 廢棄物의 資源化와 適正管理의 理念轉換의 관점에서 廢棄物의 再利用化·資源化에 역점을 두어 國家·地方自治團體의 적극적인介入으로 處理 및 管理體制의 廣域화와 共同處理方式의 새로운 導入이 바람직하다.

## (2) 研究의 目的 및 展開方法

本研究의 目的은 現在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廢棄物處理問題에 대한 法的, 行·財政的, 技術的인合理的 方案을 模索하기 위하여, 먼저 날로 늘어나고 있는 廢棄物의 社會問題화에 대한 規制의 現代的 傾向을 行政的·私法的·刑事的 規制의 側面에서一般的으로概說한 다음, 우리 나라의 現行 環境保全法과 汚物清掃法 등의 廢棄物을 다루고 있는 關係法의 構造와 特性을 概括的으로 分析한 후 그에 따른 問題點들이 무엇인지導出하고, 先進國立法의 規制事例를 美國·英國·西獨·프랑스·日本 등을 모델로 하여 特徵別로 檢計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廢棄物規制의合理的인改善方案을 體系的으로 提言하고자 한다.

## II. 廢棄物規制의 現代的 傾向

近來에 와서 產業의高度化와 都市의高密度化에 따른 廢棄物의處理問題가 급진적으로深化되고 있는理由로서, 土地利用의高度化로 廢棄物의排出頻度가 높아지고 都市地域의膨脹에 따른 廢棄物收去地域의擴大와埋立地의確保難, 大量消費水準의增大, 이에 몇불여生活環境에 대한 國民의環境權意識이 점점高潮化되어 감에 따라 國民이 國家와地方自治團體에 대한快適한環境保全의要求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要約된다. 이와 같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國民의健康하고文化的な生活에 필수적인快適한環行을保全하고改善하려는 일정한環境秩序를維持하기 위한規制的作用을環境規制行政이라 한다. 이러한環境規制行政은各國이當面하고 있는具體的인環境與件,立法政策에 따라 차이가 있

게 되며, 環境規制는 협의로 생각할 때에는 環境의 適正保全·利用·改善을 위하여 일정한 環境秩序의 形成을 도모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廢棄物의 規制에 관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人口는 계속 增加될 것이며, 都市化와 工業化는 더욱 巨大화를 지향하며, 그에 따른 廢棄物의 量은 經濟發展 및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앞으로도 계속 增大될 것이 예상될 것이고 협소한 土地에 비하여 埋立地의 不足難은 점점 극심하며 廢棄物의 不適正處理는 環境破壞를 계속하여 惡化로 물아갈 것이 展望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廢棄物의 規制는 事後的인 處理·埋立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事前 適正管理體制의 확립과 함께 資源不足 또는 資源枯渇의 문제와 관련하여 廢棄物의 再利用化·資源化를 위한 새로운 廢資源의 管理와 規制의 方向으로 과감하게 轉換하고 있다.

오늘날 廢棄物處理施設의 大型화와 完全處理能力의 開發은 물론 廢棄物의 再利用化·에너지化에 관한 研究의 深化는 美國, 英國, 프랑스 등 각 國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廢棄物의 再利用化와 資源化는 종래의 최종처리를 위한 燒却이나 埋立보다 費用이 적게 들 뿐더러 그 再利用되는 廢棄物은 그후 다시 廢棄되어 最終處理의 경우 原資材(raw or virgin materials)로부터의 廢棄物보다 大氣污染이나 水質污染物質을 적게 발생시키는 利點이 있다는 데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廢棄物의 科學的이고도 合理的인 處理規制를 위해서 列舉될 수 있는 事項으로서는 ① 廢棄物의 정확한 概念의 再定立, ② 廚棄物의 再利用化·資源化 方案의 模索, ③ 處理地와 處分地의 適正選定, ④ 廐棄物의 管理 및 處理技術 體制의 確立, ⑤ 行政組織, 財政·稅制支援의 強化, ⑥ 廐棄物處理의 費用負擔制, ⑦ 廐棄物의 危機認識과 情報體制의 強化 등의 行·財政支援策 등을 들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새로운 體制와 支援策 등을 위하여 뒷받침이 될 수 있는 法的 規制로서는 대체로 行政的 規制, 私法的 救濟·刑事的 制裁로 정리될 수 있다.

### (1) 行政的 規制

行政的 規制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關이 廐棄物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健康, 動・植物, 農作物 등에 破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事業者와 그 處理業者에 대해서 一定한 基準을 設定하여 그 遵守를 強制하는 것을 主內容으로 삼는 것인데 事前的 規制와 事後的 規制로 나누어진다. 法的 規制手段으로서 제일 먼저 강구되는 手段이 되나 아직까지 그 效果面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制手段도 종래의 皮相的・消極的・事後防止的인 保健 내지 衛生法의 領域의 公害行政의 범주에서 벗어나 人間界와 生態界가 生產的으로 調和될 수 있도록 事前 綜合的・積極的・適正管理的인 環境行政의 【側面中心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즉 現代의 人間活動의 領域이 質的・量的으로 擴大되어 自然의 自淨能力을 破壞하는 과도한 廢棄物 등을 放出하게 됨으로써 自然生態系를 중심으로 한 生活環境의 破壞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大氣・水質・土壤 등의 天然 環境資源은 이를 内部費用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管理하여 계속 利用・開發・改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廢棄物의 規制法은 단순한 制約의 規制法이 아니라 有限의 環境資源을 公的 行政活動으로 調整하는 管理法 내지 適正配分의 性質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廢棄物의 收集→저장→운반→再生分類→化學的 處理→燒却→埋立에 관하여 일부의 廢資源의 관점에서 綜合的 管理體制를 確立하고 있는 先進 外國의 경우 廢棄物의 公的 規制는 法에 의한 一寬된 規制 이외에 經濟的 유인책으로서의 처리시설비의 재정지원, 廢棄物의 再利用化・資源化 유도, 기술개발의 지원, 운영비의 국고보조 등 各種行・財政支援策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우리 나라의 改正憲法에도 環境權이 明文化된 이상 이러한 새로운 環境權의 理念은 下位法令體系인 廢棄物規制法에 흡수규제되거나 함으로써違法한 環境管理上의 行爲 또는 事業者의 操業 내지 不法行爲 등으로 廢棄物로 인하여 環境權이 侵害된 경우 行政機關에 대하여 그違法을 시정하고, 快適한 環境保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規制를 받고 있는 企業側으로서는 종래의 環境資源은 外部費用의 觀點에서 무한히 自由競爭的으로 使用해 오던 價值觀에서 탈피하여 이제

2) 徐元宇, 環境公害에 대한 法的 規制, 「環境斗法」學術會議 主題發表(1980), p. 7.

는 環境資源의 使用에 대하여 그 使用料를 內部費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 私法的 救濟

私法的 救濟는 廢棄物排出에 의한 環境污染으로 被害가 發生하고 있던가 또는 發生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그 排除 또는 警防을 청구하는 留止請求와 不法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請求로 나누어지는데 前者가 現在 또는 將來의 措置에 해당되고 後者는 過去의 事後的 措置에 해당된다.

廢棄物은 그것이 一般廢棄物이든, 產業廢棄物이든 그 處理過程 특히 集積이나 燃却 등에 있어서는 惡臭 및 病菌媒體의 發生, 大氣·水質·土壤污染 등을 유발하여 生活環境의 畜義의 가치를 파괴하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부적한 埋立은 그 埋立後에도 미국의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즈市에서 발생된 「라브 캐널(Love Canal)事件」과 같이 長期的 汚染을 일으키므로 주로 그 廢棄物施設과 不適한 埋立을 둘러싸고 인근주민의 地域環境保全 내지 集團의 環境利益保護가 私法的 側面에서 크게 문제화되고 있다.<sup>3)</sup>

私法的 救濟라 함은 民事訴訟에 의한 피해자의 救濟를 말한다. 즉 司法的 救濟를 뜻하며 救濟의 手段으로는 보통 留止請求와 損害賠償의 두 가지가 있으나 앞의 行政的 規制가 效率的으로 施行된다면 環境污染에 의한 被害는 그만큼 줄어 私法的 救濟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나 지금까지 廢棄物의 消極的規制로 이미 공단지대 및 대도시 주변의 汚染被害가 심각하게 增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成長에 따른 만큼 深化될 것이 예측되므로 私法的 救濟의 엄격한 實現으로 사전적 금지청구 등을 인정함으로써 事業者 스스로 廢棄物의 放出을 억제하는 警防的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規制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3) 刑事的 制裁

廢棄物 規制로서의 刑事的 制裁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產業廢棄物의 處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데(環境保全法 제 50조 1항)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產業

3) 具然昌, 環境污染의 私法的 救濟, 「環境과 法」 학술회의 主題發表(1980), p. 9.

廢棄物의 處理를 業으로 한자는 1年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同法 제67조 4호)과 같이 環境污染 預防에 관한 여러 行政法規의 形式的·節次的인 規範에 위반하는 行爲에 대하여 刑罰을 科하는 경우와,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產業廢棄物을 버리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同法 제37조①) 이러한 行爲를 한 자는 6月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处하도록 하는 것(同法 제68조 1호)과 같이 行政法規에 違反하여 環境污染을 발생시키는 行爲에 대하여 刑罰을 科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后者は 廉棄物로 인한 環境污染에 의하여 사람의 生命·健康·財產 등에 害를 주거나 害하여질 우려가 야기된 때 刑罰을 科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西獨刑法(80.3 改正) 제28장은 「環境에 대한 犯罪行爲」를 실설하여 제326조(環境을 害치는 廉棄物 除去法)를 규정함으로써 廉棄物規制를 완전히 刑法化하고 있다.<sup>4)</sup> 즉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廉棄物을 함부로 許可된 施設物 밖에서 또는 許可된 節次規定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여 그 處理, 貯藏, 沈澱, 放出하거나 除去한 자는 3年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1. 毒物 또는 사람이나 公共的 위협이 있으며 感染될 수 있는 病原體를 함유하거나 產生할 수 있는 廉棄物
  2. …放射性이 있는 廉棄物
  3. 種類, 成分 또는 量에 있어서 水質·大氣 또는 土壤을 汚染시키거나 해롭게 變化시킬 수 있는 廉棄物
- ② 原子力法에 의하여 발하여진 法令에 의하여 放射性 廉棄物의 引渡에 대한 의무가 있는 者로서 放射性 廉棄物을 引渡하지 아니한 자도 同一하게 罰한다.
- ③ 第1項의 경우에 未遂는 罰한다.
- ④ 過失로 위 罪를 犯한 者는 1年 이하의 自由刑 또는 罰金刑에 處한다.
- ⑤ 廉棄物의 미미한 量으로 해롭지 않을 때는 罰하지 아니한다.

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에도 一般刑罰과는 달리 時效, 泰아의 법적 지위 被

<sup>4)</sup> 西獨刑法(80.3 改正) 제28장 「環境에 대한 犯罪行爲」에서는 水質汚染, 大氣汚染 및 震音도 刑法化하고 있다.

害認定 등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볼 때 環境犯罪를 行政犯으로 보아 個人의 生命이나 건강을 해친 구체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故意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刑事犯化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과실범과 未遂犯까지 處罰하는 매우 强化된 刑罰이 아닐 수 없다.

폐기물에 의한 環境汚染에 대하여 個個의 被害者에 대한 個人的 法益의 侵害을 예상한 罪를 적용하려면 有害한 廢棄物의 排出行爲와 被害者側에 대한 具體的인 결과발생과 因果關係, 그리고 이러한 個個의 被害에 대한 加害者側의 故意나 過失의 存在를 밝혀야 하는 實務上의立法技術의 開發을 위한 社會科學技術의 發達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環境犯罪가 점점 刑法化하는 경향이므로 事業者 및 廢棄物處理業者の 環境倫理觀에 立脚한 廢棄物의 管理가 새삼 촉구된다고 할 것이다.<sup>5)</sup>

### III. 廢棄物規制의 主要基盤實態

우리 나라에서 現在 廢棄物을 다루고 있는 法律로서는 ① 日常生活에 의한 一般廢棄物의 規制는 汚物清掃法, ② 陸上의 產業廢棄物의 規制는 環境保全法, ③ 海上의 廢棄物에 대한 規制는 海洋污染防治法, ④ 비닐, 합성수지 등의 規制는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이 있고 기타 관련 法律에서 汚物의 投棄의 관점에 일부 다루고 있는 實情이다.

#### (1) 汚物清掃法

污物清掃法은 1960 年度에 保健·衛生의 觀點에서 產業의 급속한 발달 이전에 비교적 빨리 制定된立法으로 一般廢棄物 즉, 家庭의 日常生活에서 發生되는 汚物과 쓰레기를 다루고 있다. 그후 사업장의 產業廢棄物과 해양의 기름의 處理를 對象으로 한 環境保全法과 海洋污染防治法의 制·改正時に 일부 改正을 하여 왔으나 業務移管의 정도에 그친 範이 없지 않다.

이 法이 규정하고 있는 基本骨格은 다음과 같다.

5) 具然昌, 公害處罰上의 몇 가지 問題, 法曹, 法曹協會, 第28卷, p. 65.

첫째, 同法 第 2 條(定義)에서 「汚物이라 함는 쓰레기, 재, 汚泥, 糞尿, 動物의 死體 기타 사람의 일상생활에 不要한 物質로서 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이 아닌 廉棄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쓰레기終未處理設이라 함은 燃却·再生分類·堆肥化 등의 處理方法에 의하여 쓰레기를 最終的으로 안전하게 處理하는 施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汚物處理의 義務者를 區·市·郡으로 하고 土地 또는 建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의하여 集積된 汚物을 收集·處理하며(同法 제 5 조).

세째, 事業者의 義務로서 工場 또는 事業場을 經營하는 者와 기타 人的·物的 綜合施設을 갖추어 營利 또는 非營利事業을 영위하는 자는 操業으로 因하여 생기는 汚物을 保管·運搬 또는 處理할 義務를 지우고 있다(同法 제 6 조).

네째, 糞尿와 쓰레기의 終末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廳長 및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장, 칙찰시장 또는 道知事는 매년 汚物處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法 § 9).

## (2) 環境保全法

本法에서의 廉棄物의 處理規制는 크게 나누어 우선 일정한 施設과 基準을 갖춘 產業廢棄物處理業者를 育成시켜 이들로 하여금 廉棄物을 收集·處理하게 하고 이를 규제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產業廢棄物을自家處理能力이 있는 事業者에게는 이를 許容하고 이를 規制 감독하고 있다.<sup>6)</sup>

(가) 定義 : 本法에서는 產業廢棄物에 대한 具體的인 定義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行政當局은 汚物의 定義와 外國의 立法例에 비추어 事業活動에서 발생되는 廉棄物 중 「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플라스틱類」라고 지칭하고 있고, 本法 제 51 조에서 廉棄物의 廉棄制限의 種類와 本法 施行規則 제 30 조 附表 9에서 許可業種別로 廉棄物의 種類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정확한 定義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安基熙, 環境關係法規, 東完社, 1981, p.1-73.

(나)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產業廢棄物處理의 適正化와 規制·監督의 確保를 위하여 그 處理業을 許可制로 규정하고 있다. 즉 產業廢棄物의 處理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거나, 事業者가 일정한 處理施設을 갖추어自家處理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同法 제50조).

(다) 廢棄物의 廢棄制限： 產業廢棄物處理業者の 處理過程에서 적어도 同法 제 14 조에 의한 汚染物質 排出許容基準이 하로 處理한 後에 排出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廢棄物處理의 適正性을 確保하고 있다(同法 제51①). 또한 處理業者の 廢棄物의 運搬申告量 의무화함으로써 廢棄物의 一覽된 파악으로 不法 處理를 방지하려는 意志를 담고 있다.

(라) 廢棄物의 終末處理： 產業廢棄物의 최종단계인 終末處理가 環境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격히 규제·감독하기 위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후 일정한 方法과 基準에適合하게 處理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海洋汚染防止法

이 法은 船舶 및 海洋施設로부터排出되는 廢棄物을 規制하여 海洋環境을 保全함을 目的으로 制定되어 우선 첫째로, 廢棄物의 定義로서 「사람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 등으로서 원활한 海洋利用을 저해하는 물질(기름제외)」이라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廢棄物의 資源化에 접근하고 있다 하겠다(同法 제 2조).

둘째로는 船舶 또는 海洋施設로부터의 排出禁止로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확보와 특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폐기물의排出을 禁止시키며,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千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同法 제 49조).

세째로는 廉油處理는 事業의 許可를 받는 業者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 17조).

### (4)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

(가) 目的： 「合成樹脂廢棄物(이하 “廉樹脂”라 한다)의 收集·處理

및 費用負擔 등 규정으로 廢棄된 資源의 再活用과 自然環境의 保全에 기여함」이라고 규정되어 合成樹脂에 限定되어 그 이외의 重金屬 등이 함유된 특정유해물질 등의 處理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同法 제1조).

(나) 國家地方自治團體 등의 淨化義務 :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廢樹脂로 인하여 自然環境이 汚損되거나 汚損될 우려가 있는 때에 이를 淨化할 義務를 진다. 또한 合成樹脂 또는 合成樹脂製品의 製造·加工·輸入業者 및 그 製品을 使用하여 영업을 하는 자(이하 “原因者”라 한다)는 그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발생된 廢樹脂를 收去하여 處理할 義務를 진다(同法 제2조).

(다) 資源再生公社의 設立 : 廢樹脂의 收集·處理 및 再活用을 위하여 韓國資源再生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고 있다(同法 제5조).

(라) 事業處理對象 : ① 廢樹脂의 收集處理 ② 廐樹脂의 再生 및 活用을 위한 技術開發 ③ 廐紙類·廢油類·廢고무류의 收集整理·再生 ④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으로 限定 規定하고 있다(同法 제9조).

(마) 費用負擔 등 : 原因者は 公社가 實施하는 廐樹脂의 收集處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29조).

#### IV. 廐棄物規制의 問題點

##### (1) 廐棄物 概念의 未定立

우선 一般的으로 말해서 廐棄物은 사람의 日常生活에서 발생되는 一般廐棄物과 一定規模이상의 產業活動의 過程에서 生成되는 產業廐棄物로 나눌 수 있으나 現行 우리 나라의 法體系는 產業廐棄物에 대해서는 正確한 概念을 設定하지도 않은 채 一般廐棄物에 대해서는 汚物清掃法, 產業廐棄物에 대해서는 環境保全法, 海洋廐棄物과 기름의 排出에는 海洋污染防止法으로 각 規制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一般汚物 處理業者와 產業廐棄物 處理業者間에 업무범위와 처리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sup>7)</sup> 이제 廐棄物의 定義를 내리면서 「재·오니·폐유 등의 종류를 法에서 정하

7) 安基熙, 改正 環境保全法解說, 環境保全協會報, 1982. 1. 15.

는 것은 廢棄物의 再利用 및 資源化를 고려할 때 아무런 意味가 없다는 점이다. 廢棄物이 日常生活에서 發生되던 產業活動에 生成되던 處理責任主體의 區別만으로 그치고 어떤 廢棄物이든 「廢棄物이라 합은 이동 가능한 物質로서 占有者가 이를 放棄할 意思가 있거나 또는 그에 대한 秩序있는 除去가 一般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폭넓은 概念을 設定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事業者가 이를 再利用化하거나 資源化로 에너지화하려 할 경우의 廢棄物의 대상까지로 況적으로 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 燃却 또는 埋立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原因者를 알 수 없는 廢棄物의 處理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廢棄物의 定義를 단순한 處分 概念에서 벗어나 再利用 및 廉資源의 管理面에서의 效率性과 生態系의 保全側面에의 적극적인 資源回復의 개념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 (2) 廢棄物再利用化 및 資源化의 未規制

오늘날의 環境問題는 增加되는 人口와 隨차 枯渴되어가는 資源問題의 相關關係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賦存資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나라로서 現行法이 廢棄物의 再利用化 및 資源化를 위한 法的規制와 이를 시행할 制度의 뒷받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 廢棄物은 얼마큼 再利用(recycle)되므로 廢棄物의 處理量 감소화의 관점과 둘째, 資源 및 에너지의 積蓄에 비추어 장기적인 資源確保의 次元에서도 적극적으로 活用化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자원화 및 에너지화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이 귀중한 資源을 비경제적으로 소각할 경우의 大氣污染, 埋立할 경우의 水質·土壤污染 要因을 유발하여 土地利用難을 增大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廢棄物의 選別處理 및 再利用·資源化로 轉換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서울의 난지도, 부산의 저습지 등을 천혜의 埋立地로 알고 그대로 埋立 處分되지만 몇년 후면 그 많은 廢棄物을 먼 바다까지 실어다 방축을 쌓은 후 매립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그에 따른 방축비와 매일 증가되는 수송비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전망된다.

### (3) 資金確保의 困難

現行法이 產業廢棄物의 處分을 一部 事業者의 自家處理外에 處理業者の 自律에 의하여 處理케 하고 있으므로 이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이 埋立地의 確保와 中間處理施設 및 終末處理에 드는 막대한 先行投資가 따라야 하므로 資金調達이 곤란하여 採算性이 맞지 않는 重金屬 등이 함유된 特定유해 물질의 處理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야음을 틈타 不法投棄하는 문제점까지 대두되어 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감독규제와 함께 국가가 處理責任主體가 되는 行·財政的 支援策을 要하는 事項으로 지적되고 있는 實情이다.<sup>8)</sup>

### (4) 處分地의 確保難

現在까지 大都市의 廢棄物은 대부분 埋立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國土가 협소한 우리 나라로서는 그 處分地의 確保現狀이 심각화되고 있다. 廢棄物處理를 위해서 埋立處分地나 中間處理施設의 設置를 위해서 큰 규모의 用地가 필요 하는바, 이러한 目的을 위한 土地의 절대량이 不足할 뿐 아니라 모처럼 用地를 確保하여 廢棄物 處理施設을 設置를 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원시적인 소각방법으로 處分하여 온 관계로 그로 인한 大氣污染·악취·폐연에 시달린 그 地域住民의 반대와 不適한 埋立으로 인한 第2次 汚染을 염려한 나머지 農·漁業補償 등의 用地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다. 더구나 全國土의 식량증산을 위한 國土保全의 次元에서도 廢棄物 處理施設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전용하여야 하는 상대적인 난관에 당면하고 있다.

### (5) 技術의 後進性

經濟成長에 따라 이에 역기능으로 대두되는 副產物인 汚染에 대한 방지 기술·순환재이용기술 등 적절한 과학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고 또한 社會指標, 평가, 감정, 검증 등의 社會科學技術이 비례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現行 우리 나라의 廢棄物 處理技術 및 再利用 및 資源化 技術은 一般

8) 釜山商工會議所, 釜山의 產業廢棄物에 관한 研究, 1979, p.154.

生産技術에 비하여 미진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國家의 制度的 system이 이룩되지 않아 이 분야의 기술자가 절대부족하며 또한 종래의 「쓰레기」, 분뇨를 취급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 분야의 기술을 기피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政策介入으로 廢棄物의 減量化·安定化·無害화의 技術開發은 물론 廢棄物, 再利用化, 資源化의 새로운 技術體系의 確立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 (6) 廢棄物處理體制의 未備

廢棄物處理의 基本은 첫째, 收集·運搬이나 處分, 空間의 適正利用을 위한 減量化, 둘째, 廢棄物의 再利用化, 資源化로 인한 經濟化, 세째, 自然이나 人間 및 農作物 등·식물 등에 대한 無害化와 安定化에 있다.

이러한 處理를 主體別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發生者 自體處理 ② 資源化·再利用化를 위한 共同處理 ③ 處理業者의 處理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公社의 處理體系를 들 수 있다.

(가) 處理業者의 處理에 의한 問題點 : 現行法體系가 一般廢棄物에 대해서는 汚物清掃法에 의하여 區·市·郡의 行政當局에 그 處理義務를 지우고 있으나(同法 제5조) 環境保全法上의 產業廢棄物의 處理에 대해서는 當局의 處理義務 없이 廢棄物을 排出하는 企業體의 責任下에 自家處理하거나 處理業者에 의뢰하여 處理하도록 규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 中小企業에서는 排出量이 적어 야음을 톰타 不法投棄할 우려가 있는 점.

둘째,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일반 오니·진개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公共水域과 土壤의 第2次 汚染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

세째, 이용가능한 廢棄物일지라도 이를 再利用化·資源化하는 體制의 미비로 소각·매립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점.

네째, 處理業者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바 정부의 처분지 배려와 행·재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法에 규정된 엄격한 處理施設의 설치 및 가동이 어려운 점.

다섯째, 處理業者에 의존하게 되므로 事業者 스스로의 一團을 끊어 共同處理를 유도하지 못한 점.

(나) 새로운 「公社組織」의 未活用 :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合成樹脂廢棄物의 收集·處理를 위하여 「合成樹脂處理事業法」(79.12.28)에 의하여 「資源再生公社」를 창설·운영하고 있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廉棄物의 處理를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창설한 것은 바람직하나 유해한 중금속에 비하면 훨씬 덜 위험한 폐수지의 수집·처리·재생에 대해서만 사업범위를 한정한 것이 문제점이다. 그외의 대통령령으로 폐지류·폐유류·폐고무류로 사업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폐수지의 정화의무만 지울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처리업자가 그 처리를 기피하는 중금속 등의 정화의무까지도 지원 「公社」로 하여금 정부지원하에 처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지 않는 점.

둘째, 일부 영세기업이 이미 자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폐지류·폐유류·폐고무류 등은 公社에 위임함으로써 우선순위의 바뀜과 함께 기존영세기업과 알력이 예상되는 점.

세째,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公社體制로의 근본취지는 큰 이익이나 영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快適한 환경보전의 實現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과감한 출연·보조금 등의 지원을 기피함으로써 모처럼의 새로운 기구 창설에 의하여 그 존재의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 共同·廣域處理體制의 未備 : 廉棄物處理의 責任對象과 그 管理主體의 變化는 個人的 위생과 건강에서부터 출발하여 地域社會의 청결 및 地域環境 保全 그리고 全國家의 環境保全 및 국민의 건강 保護, 더 나아가서는 全地球的 管理로 변천되어 가고 있다.<sup>9)</sup>

그런데도 우리 나라는 環境容量으로서의 國土가 협소한 관계로 全國土를 놓고 全國民이 함께 處理問題를 논의할 필요가 절실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국민·전문가·企業人·處理業者·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共同體 의식을 고조하고 지역주민의 유대 강화

9) 安基熙, 公害管理와 環境保全法解說, 公害對策, 1978, p. 90.

등으로 각자가 부분환경과 전국토의環境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求心體 役割의 協議體가 없다는 점이다. 일부 선진공업국들처럼 지역문제  
는 그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가장民主的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제  
도적 장치가 없어 그 처리 문제는 점점 더深化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V. 外國의 廢棄物規制

各國의 廢棄物規制를 특징별로 考察하는 의도는 前章에서 導出된 問題  
點을合理的으로改善하는 뜻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廢棄物規制  
에 필요한 方向으로 主要部分만을 발췌하기로 한다.

### (1) 美國의 固形廢棄物處理法(Solid Waste Disposal Act 1970) 등

(가) 廢棄物의 概念 및 種類 : 固形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 그  
밖의 固形狀의 廢棄物로서 下水中的 固形廢棄物이나 위 廢水 속의 진흙찌  
꺼기 그 밖의 浮遊物質 등을 除外한 것」(同法 제230조(4))라고 廢水와의概  
念을 정확히 구분한다.

이와 같은 廢棄物은 그 発生원(sources)에 따라 日常生活 및 商業活動  
의 과정으로부터 排出되는 一般廢棄物과 產業活動의 過程으로부터 放出  
되는 產業廢棄物로 大別하고 農業畜產活動의 農產廢棄物과 鑄工業活動으  
로부터 排出되는 工業廢棄物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위 兩者는 美國全體  
폐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다.<sup>10)</sup>

(나) 資源保存 및 回復法과의 關係 : 당초 廢棄物의 處理規制를 위하여  
제정된 1965年的 固形廢棄物法은 그 廢棄物의收集·貯藏·化學的處理·  
또는 最終的處理와 함께 그活用(utilization)을 포괄하는(同法 제203조(5))  
정의를 내렸으나 그후 1970年に 이르러서는 「處理」보다 그의「資源回復」  
에 초점을 두는「資源回復法」(Resource Recovery Act)을 制定하여 위 固形廢棄物處理法을部分적으로改正하여 그와 병용하면서「廢棄物處理」대  
신에「廢棄物管理」(Resource Management)라는用語를 使用하여 廢棄物

10) 鄭萬朝, 廢棄物規制, 法曹, 濟曹協會發行 第28卷, 1979, p. 25.

의 資源化 回復과 再利用(Recovery and Recycling)을 포함시키는 한편 관계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資源化 回復 등의 方法과 再利用 不可能한 폐기물의 減量化 方法과 처리시설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게 하고(同法 제 304 조),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의 제도화를 도모하며(同法 제 207·208 조) 위 방안을 수시로 大統領 및 議會에 보고하고 위 시설 등에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시 1976년에 資源回復뿐만 아니라 事前의 資源保全에 役點을 둔 「資源保存 및 回復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制定하여 이에 맞추어 위 폐기물 처리법은 事前豫防의 관점으로 다시 改正하게 되었다.

(다) 環境廳長의 權限 : 事前豫防의 規制로서 위험 폐기물의 露天集積(opendumping)의 금지(同法 4005조), 除去命令權(同法 3008조), 市民訴訟(同法 7002조), 再生利用可能 廢棄物의 購買(同法 6002조)에 관한 강력한 규정 이외에도 環境廳長으로 하여금 廢棄物管理 전반에 관한 指針書를 작성발표하며 위험 폐기물 처리에 최소한의 표준(minimum criteria)을 설정하게 하며 그 밖에도 폐기물의 資源化 및 再利用을 장려하기 위한 政策으로서 ① 원자재 사용에 대한 賦課金制, ② 資源化 回復施設에의 投資에 대한 租稅特典, ③ 再生利用廢棄物에 대한 運賃上의 特典 등의 方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2) 英國의 環境污染規制法(controlol pollution Act 1974)

이 法은 公害法을 비롯하여 가장 먼저 環境法의 個別化를 시작한 英國이 環境問題에 관한 한 個別的인 개개의 問題보다 綜合的・地域的으로 다를 필요성에 立脚하여 1974年에 제 1장의 廢棄物 規定만도 제 1조부터 제 70조에 이르며 그 다음 제 2장 水貨汚染, 제 3장 騒音, 제 4장 大氣汚染까지 모두 제 109조에 이르는 綜合規制法으로 制定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環境法의 個別化를 서두르는 우리 나라로서는 좋은 교훈을 던져준 법이다. 폐기물 규제에 관한 주요 틀자는 다음과 같다.

(가) 廢棄物處理計劃과 措置 : 廢棄物의 處理를 우선 行政機關이 진다는 점이다. 처리 당국은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廢棄物의 處

理目的에 적합하여야 하며, 廢棄物處理를 위한 計劃을樹立하여야 하며 이 計劃書에는 廢棄物의 種類와 量, 再生處理 등의 處理方法과 費用의 가액이 규정되어야 한다(同法 제 2조). 또한 이와 같은 處理는 그 地域住民의 보호를 위한 주도면밀한 計劃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廢棄物 處理의 許可 : 廢棄物의 處理는 許可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故意로 어떤 土地에 廢棄物을 積置할 수 없다(同法 제 3·5조). 許可 받은 業者가 과다한 處理費用 등을 負擔하지 아니하거나 당국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許可條件의 變更·修正·取消를 명할 수 있다(同法 제 7조).<sup>11)</sup>

(다) 廢棄物의 收集과 處理 : 收集當局(Collection Authority)은 모든 주거의 폐기물을 수집할 의무를 지며,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의 收集을 요청한 자는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행위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한 당국에 대하여合理的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同法 제 12조④).

또한 어떤 종류의 규제받는 폐기물이 매우 위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수폐기물(Special Waste)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 17조).

(라) 廢棄物의 再利用 및 에너지化 : 廉棄物 處理當局은 廉棄物을 再利用·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同法 제 20조), 또한 廉資源의 에너지화를 위하여 热이나 電力を 生產하기 위하여 당국에 속한 폐기물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나 기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거나 전력청에 處分할 수 있다(同法 제 21조).

### (3) 西獨의 廉棄物除去法(Abfallbeseitigungsgesetz)(1972 制定; 1977 改正)

(가) 廉棄物의 概念 : 이 法은 廉棄物의 發生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단일 法律로서 규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 法에서 「廉棄物이라 함은 移動 가능한 物(bewegliche sachen)로서 占有者가 이를 放棄할 意思가 있거나 또는 그에 대한 秩序있는 除去가 一般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11) 法制處, 各國의 環境關係法, 1980, p. 56.

말한다. 이러한 定義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나라의 개념보다 폐기물의 再利用・資源化를 위하여 진보적이고도 포괄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의 廢棄物의 除去에는 폐기물의 收集(Einsammenln), 운반(Befördern), 處理(Behandeln), 積置(Lagern) 및 推積(Ablagern)이 포함된다.

(나) 基本原則 : 廢棄物은 一般 福祉가 특히 다음 사항을 침해되지 않도록 除去되어야 한다(同法 제 2 조). 12)

① 人間의 건강 피해, ② 동식물의 生育 등 위험, ③ 하천 湖沼, 土地 등의 有害, ④ 大氣・소음에 有害作用 등.

(다) 除去義務者の 除去原則 : 除去義務者로서의 占有者는 廢棄物을 除去義務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이 法에서 특이한 것은 州法에 의하여 관할 公法上의 단체는 그 관할 영역내에 발생한 폐기물을 除去하여야 한다. 당해 단체는 제 3 자를 이용 할 수 있다(同法 제 3 조①②). 관할관청은 폐기물 제거 의무자에게 廢棄物 除去施設의 共同利用을 提供하도록 正當한 补償을 지급함과 同時に 命할 수 있다(同法 제 3 조⑤). 또한 관할관청은 合法上의 단체보다 경제적으로 폐기물을 除去할 수 있는 폐기물 除去施設의 所有者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청에 의하여 폐기물의 제거를 위탁할 수 있다.

(라) 廢棄物處理計劃 : 모든 州는 全 地域에 대한 廉棄物處理計劃을樹立하며 이 계획은 폐기물 제거 의무자를 기속한다.

(마) 廉棄物除去施設의 許可 : 고정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經營 및 그 시설이나 經營의 중대한 변경은 관할 관청의 計劃確立節次를 須 요로 한다.

計劃確定節次에 대하여 청문절차(21조), 토의기일(22조), 계획변경(23조), 청문절차의 결과(24조), 계획확정의 결정(25조), 계획확정의 법적효과(26조), 예정계획완성전의 계획변경(27조), 계획결정의 취소(28조), 경합(29조) 등의諸節次規定을 두고 있다.

(바) 收集 및 運搬의 認可 : 廉棄物은 영업으로서 또는 經濟的 企業의 범위내에서 관할 관청의 認可를 얻어서만 收集 또는 運搬한다(同法 제

12) 法制處, 前揭書, p. 235.

12조).

#### (4) 프랑스의 廢物除去 및 材料回收에 관한 法(1975)

(가) 廢棄物의 概念 : 生產, 加工 또는 利用過程에서 생기는 모든 廢棄物(le résidu)과 폐기되거나 그 소유자가 폐기할 예정으로 있는 물질, 재료 또는 기타 모든 동산은 이 法에서 말하는 廉物(Le déchet)이다(同法 제 1조).<sup>13)</sup>

廢棄物의 除去(l'elimination des déchets)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에너지로 回收(La récupération)하고 기타 모든 生產物은 危害를 除去할 수 있는 方法으로 外部에 積置收集·運搬·저장·분류 및 처리 작업이 포함된다(同法 제 2조).

(나) 廢棄物이 생기는 製品의 生產 및 分配 : 製品生產者와 輸入業者는 제조 또는 수입제품이 法의 규정에 의하여 廉棄物이 除去되어야 할 성질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당국은 그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同法 제 5조). 또한 廉棄物에 생기는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보고, 발매, 판매 및 이용자의 활용은 당해 폐기물의 除去를 용이한 방향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과, 수입업자 및 분배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수를 조건으로 폐기물을 除去하거나 除去에 협력하게 할 수 있다(同法 제 6조).

(다) 廉棄物의 除去 : 법에 규정된 廉棄物은 제조·수입·운반 또는 除去하는 企業은 그 폐기물의 출처·종류·특성·분량·용도 및 除去方法에 관한 모든 정보를 行政當局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同法 제 8조). 또한 특정지역 내에서의 특정분류의 폐기물의 除去에 관한 사항은 여론조사(l'enquête publique)와 지방당국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는 참사원령(le décret en Conseil d'estat)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同法 제 10조).

(라) 廉棄物回收 : 廉棄物의 除去는 모든 작업 단계에서 다시 利用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에너지의 回收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同法 제 15조 및 제 16조).

13) 法制處, 外國法令速報, 제 2권 제 6호, 1975. 12.

또한 정부는 環境保護 또는 재료의 부족상태의 타개를 위하여 제품생산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재료의 최소회수비율을 정할 수 있다(同法 제17조).

(마) 廢棄物 取扱所 : 環境保에 기여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 機關인 全國廢棄物取扱所를 설치하며, 이는 廢棄物의 除去 및 回收活動을 조장하고 공익을 위하여 廢棄物의 除去 및 回收業務를 행한다. 全國廢棄物取扱所의 구성은 ① 국가대표, ② 지방자치단체, ③ 관계인 및 관계단체 대표로 되며 동 취급소는 廢棄物除去 및 回收業務의 원활한 遂行을 위하여 보조금 및 대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同法 제 22조).

(바) 工業用 廢熱의 回收 : 廢熱을 大氣中에 방출하는 工業 施設은 그 熱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를 한 때에는 廢熱의 방출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제 3자가 그 廢熱을 공동주택 또는 產業施設의 난방용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同法 제 24조).

(사) 기타 廢油再生의 규정에 관한 命令 : 프랑스는 이 외에도 위 命令을 1979. 11. 21에 제정 공포함으로써 모든 廢油를 再生 또는 廉棄하는 行爲에 적용하고 있다. 이 廐油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에는 再生하여 使用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에는 산업용연료로 처리한다. 廐油處理施設을 경영하는 자는 許可를 받아야 하며 이 許可證의 발급은 環境擔當相의 命令權으로 이루어진다.

## (5) 日本의 廐棄物處理 및 請掃에 관한 法律

(가) 廐棄物의 概念 : 廐棄物이라 함은「쓰레기・炭滓・汚泥・糞尿・廢油・廢酸 및 알카리, 동물의 死體 기타 오물 또는 不必要한 物質로서 固形狀 또는 液體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產業廢棄物 이외의 廐棄物을 말하며 여기서 產業廢棄物이라 함은「事業活動에서 생기는 폐기물 중 탄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폐플라스틱類 및 기타 命令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계속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개념설정은 廐棄物의 再利用을 위해서는 不適한 개념이다.

(나) 實務宣言 : 廐棄物의 適正處理에 대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14) 法制處, 各國의 環境關係法, p. 308.

事業者의 責務로 宣言하고 있으며, 土地 또는 建物의 占有者에는 청결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同法 제 3 조, 제 4 조)

(다) 廢棄物의 處理: 우선 一般廢棄物은 市·町·村의 일정한 處理計劃下에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許可를 받아 행한다.

다음 產業廢棄物은

첫째, 事業者 및 地方 公共團體에 處理義務를 지운다.

둘째, 市町村은 單獨 또는 共同으로 광역적인 처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행한다.

세째, 事業者의 處理로서 사업자 스스로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운반 또는 處分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

네째, 產業廢棄物處理業者の 處理로서는 法令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어 당해 사업을 행하려는 관할 구역의 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同法 제 14 조).

다섯째, 地方公共團體는 產業廢棄物에 대한 處理施設 기타 收集·운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同法 제 13 조).

## V. 廉棄物規制의 改善方案

### (1) 概念의 定立 등 法規의 補完

지금까지의 論旨를 綜合하여 볼 때 이제 廉棄物은 귀찮고 단순한 處分의 對象만이 아니라 技術의 開發에 따라 얼마든지 再利用·에너지化의 廉資源管理의 對象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生産過程에서부터 廉棄物의 選別管理體制에 廉棄物의 再利用化의 分類는 廉棄物의 量的 減少화와 安定化를 가져올 뿐 아니라 資源의 절약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특히 연료가 부족한 우리 나라로서는 廉熱을 난방으로 이용하는 方向으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예 마크의 경우 가정용 난방의 40%를 겸함). 그러므로 우선 첫째로, 廉棄物의 定義를 종래의 種類 列舉를 지양하고 處理責任의 분배에 의하여 一般廢棄

物·產業廢棄物은 구분하되兩者를 폐기물의 관점에서一元화하여「移動可能한 物質로서 占有者가 이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 대한秩序 있는 除去가 一般福祉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림으로써 유조열차의 사고시 발생된 폐유는 물론 공터에 주인 없이 쌓이는 것도 폐기물의 대상이 되어 당국에 의해 쉽게 처리되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종전대로 종류만 나열한다면 廢棄物의 再利用·資源化 및 資源回復·資源保全의 면에서 볼 때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오늘날 美國의 경우에는 이미 廢棄物의 規制는 處分이나 資源回復의 次元을 떠나서 事前豫防의 側面에서 「資源保全」에까지役點을 두는 事前管理規制로 轉換된 것은 좋은 교훈을 삼아야 한다.

둘째로, 廢棄物의 法的規制는 廢棄物處理의 許可와 운반신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收集·再生許可 등은 물론 廢棄物의 發生→收集→分類→運搬→中間處理→最終處理→埋立 등 모두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行政當局이 관여하는 一寬된 處理體制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法은 廢棄物의 處理를 處理業者에 의해서 處理하고 있으므로 감시·감독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 중금속 등의 특정 유해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폐기물은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위임받은 公社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째로, 憲法에 環境權이 明文化되어 國民의 環境權意識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으므로 廢棄物處理施設을 둘러싼 紛爭이 겹증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法的補完은 물론 점점 產業廢棄物의 放出이 刑事犯化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그 벌칙을 좀더 強化할 필요성이 있다.

## (2) 廢棄物의 再利用化 및 資源化體制確立

(가) 廢資源의 再利用化와 에너지化： 廢棄物의 再利用化 및 에너지化는 賦存資源의 不足과 에너지의 深刻性에 비추어 長期的인 資源確保라는 觀點과 發電用으로서의 에너지화되므로 廢棄物의 減量化라는 觀點에서도 우리 나라로서는 적극적인 方向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廢資源의 가격은 廢棄物에서 再利用된 商品과 原資本로 만든 商品과의 生產價格差

의大小에 따라 결정되며, 再利用化・資源化의 種類와 그 費用을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要因이 고려되어야 한다.

(a) 再利用・資源化의 種類

(i) 物質回收(material recycling): 廢棄物을 處理해서 特定의 二次物質을 回收하는 것(예: 廢紙→종이, 古鐵→鐵製品)<sup>15)</sup>

(ii) 物質轉換(material conversion): 廢棄物 중에서 副製品形의 物質을 새로운 形態로서 回收하는 것(예: 廢유리, 廢고무→도로포장재, 연탄재→벽돌; 분뇨→비료)

(iii) 에너지 轉換(energy conversion): 廢棄物로부터의 에너지 價值의 回收이고 直接 可燃性廢棄物을 보일러로 燃燒시켜 水蒸氣나 溫湯을 얻는 것과 廢棄物을 石炭燃料 등의 補助燃料로 使用하여 熱에너지로 이용하거나, 热分解時 氣體液體 등의 2차 에너지를 얻는 것

(b) 回收體制: 資源化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同質을 함유한 廢棄物이 어느 정도 整理된 量으로 일정하게 계속하여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收集→運搬 등의 回收體制를 確立하여야 한다.

(i) 選別回收: 容器에 選別投棄, 포장시 선별분류

(ii) 回收事業의 支援: 稅制・金融・補助金 惠澤부여

(iii) 收集・運搬 등의 體制 確立: 새로 구축

(iv) 回收處理 技術의 開發 및 用地確保

(c) 再生利用技術: 再生利用技術의 問題點은 지금까지 國家의 支援없이 自律에 맡겨온 점이다. 先進國의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현재 일반화된 폐지류・비닐・폐플라스틱類의 再生뿐만 아니라 산 알카리・섬유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長期的인 政策次元에서 무한히 지원 개발함으로써 再利用 에너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再生利用業者의 育成支援: 우리 나라는 실제로 再生利用業은 오래전부터 산발적으로 있어 왔으나 組織化된 기구나 質과 量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 등의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外國에서와 같이 제품의 生產過程에서부터 廢棄物의 量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長明的인 計劃下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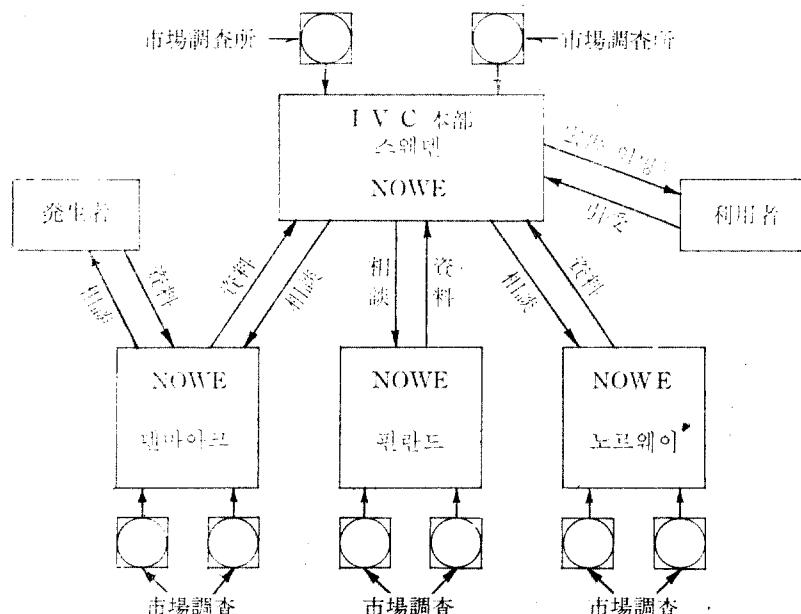
15) 釜山商工會議所, 前揭書, p. 111.

再利用・資源化의 技術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認・許可의 法制로 보호 강화하는 한편 行・財政支援策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廢棄物交換所의 設置・運營

(a) 交換所의 必要性： 一方의 廢棄物은 他方에 있어서는 資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廉棄物 交換制度는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활발한 경향이므로 우리 나라로서도 적극권장해 볼만한 制度이다.

우선 첫째로, 유럽諸國을 살펴보면 埋立地가 협소하다는 점과 한 나라의 惡影響은 다른 나라이에 바로 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利用者의 登錄과 商工會議所의 仲介에 의하여 兩者間의 自由意思에 따라 이루어지는 「西獨」과 經濟界自體(商工會議所)가 廉棄物市場에서의 可能性을 파악하여 廉棄物市場을 직접 운영하는 「歐洲共同體」(EEC) 및 發生者와 利用者가 간에 資料와 主要相談役割을 담당하는 「北歐諸國」의 交換所가 設置되고 있는바 특히 「北歐諸國」의 交換所의 기구를 여기서 참고삼아 소개하고자 한다.



〔廢棄物交換北歐機構(NOWE: The Nordic Organization for Waste Exchange)〕

〔機能説明〕：「NOWE」는 該當地域內의 廢棄物交換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된 機構로서 1973년 11월부터 스웨덴 水貨・大氣研究所(IVL: Swedish Water and Air Pollution Laboratory)를 中央事務局으로 활동을 계속하여 IVL 本部는 利用者와 各國 支部와의 연락을 취할 때 각 支部의 發生者와 IVL 本部와의 정보교환을 담당한다. 各國 支部는 下部組織으로 각각의 市場調査所를 가지고 있다. 「NOWE」의 主業務은 各國에 배치되어 있는 支部가 收集한 發生者로부터 利用회망자료를 IVL 본부가 집약회망자로부터의 상담을 各國 支部를 통하여 發生者에게 연락하여 廢棄物 공급자와 수요간의 중개를 하는 일이다.

둘째로 英國의 廢棄物交換所(The UK Waste Materials Exchanges)는 產業活動에서 發生되는 廢棄物을 다른 企業에 소개하는 제도로 주요활동은 年 4회 발행되는 편집 또는 교섭을 통하여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2년간의 시험 끝에 폐기물의 품목을 분류한 것이며, 이 교환소의 實績은 9,851 건 조사의뢰에 174 건의 상담성공으로 600만 파운드(약 29억)에 상당하고 있다.

세째로 日本의 경우에는 愛知와 大分縣에서 실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財團法人 Clean Japan Center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업의 交換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자 중 82.9%가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b) 解決代案： 賦存資源이 절대로 부족한 우리 나라는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資源은 계속 필요할 것이며 相對的으로 그에 따른 廢棄物 또한 계속 增大할 것이 전망되므로 국토가 협소하여 處分地가 부족한 실정에 비추어 일단 廢棄物의 再利用・資源化의 回收體制 확립과 함께 交換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廢棄物의 감량화・安定化 및 經濟化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조직은 기존의 「상공회의소」나 「資源再生公社」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 (3) 稅制・金融・財政支援

廢棄物을 發生하는 企業活動의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利潤의 극대를 追求하게 되므로 이러한 經濟的 活動으로 環境危機가 점점 深化되고 있다. 이를 規制하기 위한 效率的手段은 經濟的 誘引策이다. 따라서 法的인

規制 이외에 政府補助金·融資 및 租稅減免과 같이 財政支援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廢棄物 施設에 대한 補助金制가 없지만 現在 施行되고 있는 融資에 대한 年利는 우리 나라가 18.5%로 日本의 6.7%보다 높고, 상환기간은 우리 나라가 3~5 년인데 비해 日本은 10年이며, 租稅減免도 法人稅의 경우 日本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處理業者가 대부분이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 政府의 補助金 등의 改善策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4) 處理地의 適正選定과 確保

廢棄物이 空地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에는 審美的인 경관을 해치고, 燃却할 경우의 大氣污染, 단순매립일 경우에는 水質污染 및 土壤污染을 일으키는 要因이 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었다. 그래서 西獨은 현재 바다의 바위섬을 깊이 파서 플라스틱으로 안전방벽을 고형화한 후 그곳에다 수년간에 걸쳐 투기한 후 플라스틱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쌓아 나무를 심어 새로운 동산을 만드는가 하면, 美國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廢棄物을 列車로 멀리까지 싣고 가서 버리고, 東部海岸地帶에는 펜실베이니아의 炭田이나 廢礦에서 處理되고 있어 廢棄物의 安全處理는 全世界的인 共通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燒却·埋立의 경우 그 最終處分地의 選定은 ① 處分地의 環境條件, ② 地理的 條件, ③ 廢棄物發生源과의 거리, ④ 廢棄物運搬에 따르는 교통소통문제와 수송비, ⑤ 보건상의 복토자료의 확보성과 조성 후의 이용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大都市 근교에는 適合한 埋立地가 없는 실정이므로 埋立地의 選定을 안이하게 一個 處理業者の 自律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國家·地方自治團體가 함께 全國土의 保全과 長期의in 土地利用의 效率化의 次元에서 해결하여야 할 重大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5) 技術體系의 開發·育成

(가) 科學技術 : 廢棄物은 資源의 남용이나 技術의 非人間化에서 오는 副產物이며 이런 副產物의 一種인 廢棄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발

생의 원인이 되는 그 기술 이상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sup>16)</sup> 따라서 오염의 위험성이 없거나 감소가 가능한 無公害技術과 資源의 순환재이용기술 및 대체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주입시킨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社會技術 : 外部費用을 内部費用으로 負擔시키고 生態系의 편익비용도 포함한 새로운 사회지표, 평가·검증·감정·관리들의 사회기술의 개발이 진요하다.<sup>17)</sup>

## (6) 綜合處理制의 確立

(가) 行政機關의 實務 : 廢棄物管理의 終局的인 責任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廢棄物處理責任의 主體는 一般廢棄物인 경우 土地·건물의 所有者나 占有者 또는 처리업자에서 공공단체로, 產業廢棄物인 경우 제 1차는 사업자나 처리업자가 제 2차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가 전체의 廢棄物處理計劃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處理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產業廢棄物處理는 排出源인 企業體에서부터 無害化를 목표하고, 處理過程에서는 減量化·安定化를 追求하면서, 事業者 단독으로 處理 못할 경우에 共同處理體制를 갖추도록 적극 권장하여 企業相互間의 기술정보교류와 함께 行政當局이 行·財政으로 支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廢棄物의 處分地의 確保가 處理業者的 努力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지원하면서 廢棄物의 發生에서부터 收集·選別分類·運搬·處理까지의 일관된 體制下에서 法的 規制와 함께 經濟的 誘引策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先進工業國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므로 廢棄物의 適正處理를 위하여 行政當局이 主導하여야 할 선결문제는 우선 첫째로 廢棄物의 年間發生量과 長短期의 處理計劃에 의하여 處理過程에서부터 資源化의 廢棄物을 選別回收·交換할 수 있는 體制를 確立하는 일이다.

16) 安基熙, 公害管理와 環境保全法解說, p. 98.

17) 安基熙, 前揭書, p. 98.

둘째로, 資源不足과 에너지의 심각성에 비추어 企業體間의 共同處理 system의 권장으로 廢棄物의 廢熱을 에너지화함으로써 지역 난방의 협조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汚染으로 인한 질등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일이다.<sup>18)</sup>

(나) 資源再生公社의 活用 : 現行 廢樹脂의 收集・處理를 주로 하고 있는 資源再生公社의 事業範圍를 모든 廢棄物의 收集處理를 할 수 있도록 擴大 규정하는 한편 廢樹脂의 再生뿐만 아니라 廢資源의 管理의 側面에서 再利用・資源化의 廢棄物을 回收하고 交換해 주는 業務까지를 부여함으로써 先進國의 廢棄物處理公社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現時點에서 일반 再生業者들이 自由業으로 하고 있는 폐수지의 再生業의 영역을 침투하기보다는 일반 처리업자가 채 산성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중금속이 함유된 특정 유해물질 등의 처리가 더 시급한 실정이므로, 국가는 環境保全의 責務를 지고 있는 限收益性이 없는 폐기물의 처리일지라도 快適한 환경의 보전상 완벽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공수역과 공지・농작물 山林 등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폐기물의 처리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 會社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時宜에 맞는 일이며 전세계적으로 폐기물처리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은 편이 못되므로 정부의 과감한 출연금・보조금 등의 대폭적인 行・財政 등의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다) 廣域協議體의 設置・運營 : 廢棄物이 空地에 쌓이는 경우 奕美的인 경관을 해치고, 병원체 등으로 보건상의 위해를 일으키며, 燃却할 大氣污染・投棄・埋立의 경우에는 水質・土壤污染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이러한 廢棄物도 適正管理・技術開發에 따라 再利用・資源化로 減量化・無害化・安定化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그러므로 廢棄物의 適正management를 위하여 政治・經濟・社會・行政・法的 및 과학・기술적 모든 學問의 學際의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行政當局이 主軸이 되어 企業人, 關係專門家, 地域

18) 釜山商工會議所, 前揭書, p. 154.

代表, 教授, 公共團體, 地方自治團體, 中央行政機關이 共同으로 構成되는 가칭 “廢棄物處理 廣域協議體”를 設置·運營함으로써 그 모임의 广場에서 모든 문제점을 출직하게 적출함으로써 法的·行政的·財政的·技術의인 解決策을 民主的으로 모색하여 과감하게 실천하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sup>19)</sup>

## VII. 結語

우리 나라가 1960년대 이후부터 高度經濟成長을 계속 추구한 결과 그의 副產物로 등장한 大量의 廢棄物에 의한 環境污染과 破壞問題는 이미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廢棄物을 國民의 生活圈으로부터 신속히 處理하여야 하는 것은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의 實務이다. 그러므로 우선 첫째로, 廢棄物을 다루기에 따라 얼마든지 再利用·資源化(에너지화)될 수 있다는 外國의立法例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실정이므로 再利用·資源化를 위하여 回收體制 및 廢棄物交換所의 설치·운영 등의 制度의 確立을 촉구하는 한편, 둘째로, 地方自治團體와 國家가 직접 廢棄物의 ① 發生→② 收集→③ 選別處理→④ 運搬→⑤ 中間處理→⑥ 最終處理→⑦ 埋立 등의 一貫된 處理過程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法的, 行政的, 財政的, 技術的 支援體制의 구축·強化는 물론 세째로,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用地와 埋立地의 確保를 關係行政機關과의 협조를 거쳐 選定토록 지원해줌으로써 國土利用의 適正化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sup>20)</sup> 네째로, 廢棄物에 의한 汚染이 科學技術의 誤用 내지 무모한 응용에 의해서도 파생되고 있으므로 무공해과학기술·재생·에너지화·대체기술을 서두르는 한편 回收·選別·管理의 사회기술의 육성개발도 지원되어야 하며, 다섯째, 行政機關은 廢棄物의 절대량의 매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할 구역별에 의한 폐기물처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 適正化를 기하기 위해서 長·短期 또는 年間 處理計劃을 수립·실

19) 釜山商工會議所, 前掲書, p. 167.

20) Ibid., p. 149.

시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影響圈別에 의한 廣域的 綜合處理事業을 실시함으로써 效率的이고 專門的인 行政을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끝으로 廢棄物의 不法投棄·埋立 및 自然生態系에의 放棄는 적어도 部分的으로 國民이 環境을 感知하는 양식과 環境文盲에서 비롯되기도 하므로 環境教育 또는 홍보·캠페인 등을 통하여 가치관 수정으로 環境倫理觀을 確立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계획화에서 학교교육·시민교육·연수원교육·직장교육은 물론 조직적인 캠페인·거국적인 홍보 활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sup>22)</sup>

---

21) EEC, The European Community and Waste Recycling, 1980.

22) 安基熙, 公害管理와 環境保全法解說, p. 95.